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확대 및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하여

주택임대차 금융지원, 전세가격 상담, 전세사기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시 조례에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또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